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6. 24.(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79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관련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IV. 202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1. 일반회계 결산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1,869,989,000	12,499,824,880	11,942,117,340	95.5%
교통행정과	2,825,540,000	3,550,716,240	3,013,371,650	84.8%
주차관리과	-	240,000	240,000	100%
건설행정과	2,100,455,000	2,271,354,060	2,250,991,110	99.1%
도 로 과	3,672,044,000	3,370,690,090	3,370,690,090	100%
치 수 과	3,271,950,000	3,306,824,490	3,306,824,490	100%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37,136,501,340	28,589,501,930	7,376,925,740	1,160,679,240	76.9%
교통행정과	2,417,807,000	1,921,498,820	125,300,000	370,254,580	79.5%
주차관리과	1,281,857,000	1,281,857,000	0	0	100%
건설행정과	3,092,861,000	275,194,340	2,785,088,000	32,578,660	88.9%
도 로 과	16,618,085,810	12,439,392,210	3,734,285,740	444,407,860	74.8%
치 수 과	13,725,890,530	12,671,559,560	732,252,000	313,438,140	92.3%

다. 집행잔액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1,160,679,240	4,942,280,310	753,570	2,629,000	64,995,200
			249,652,690	842,648,780	0
교통행정과	370,254,580	195,952,780	753,570	622,000	52,360,000
			20,694,630	295,824,380	0
주차관리과	0	0	0	0	0
			0	0	0
건설행정과	32,578,660	4,180,599,920	0	669,000	0
			150,000	31,759,660	0
도로과	444,407,860	307,995,830	0	714,000	0
			180,947,850	262,746,010	0
치수과	313,438,140	257,731,780	0	624,000	12,635,200
			47,860,210	252,318,730	0

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	7,376,925	12	7,005,541	3	371,384
교통행정과	1	125,300	1	125,300	-	-
건설행정과	3	2,785,088	3	2,785,088	-	-
도로과	7	3,734,285	5	3,529,753	2	204,532
치수과	4	732,252	3	565,400	1	166,852

3. 예산의 전용

(단위: 원)

부서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도로과	인력운영비	351,118,000	21,723,000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도래 전 사망으로 퇴직금 지급 예산 확보 필요
	인력운영비	278,145,000		21,723,000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34,000,000	879,000		23년 종료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가 청구(24.1월)되어 납부를 위해 전용하고자 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879,000	

4.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33,764,553,110	40,555,133,783	33,994,784,583	83.8%
세외수입	5,347,416,000	12,145,196,080	5,584,846,880	45.9%
지방교부세 등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100%
조정교부금	60,000,000	60,000,000	60,000,000	100%
보조금	2,602,200,000	2,595,000,000	2,595,000,000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5,054,937,110	25,054,937,703	25,054,937,703	100%

나. 세출결산

(단위: 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주차관리과	33,764,553,110	18,657,078,830	2,139,123,000	11,233,878,830	55.2

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원)

구분	미수납액	과목별			
		지난년도 이월액	이행강제금	차량과태료	기타 과태료
합계	6,438,692,940	5,920,818,290	8,692,800	504,747,770	4,434,080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4	2,139,123	2	720,000	2	1,419,123
주차관리과	4	2,139,123	2	720,000	2	1,419,123

5. 기금 결산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4,177,802,850	62,300,230	1,215,827,757	1,665,518,930	3,728,111,677
옥외광고발전기금	1,000,736,120	44,726,864	123,879,204	79,152,340	1,045,462,984
도로굴착복구기금	3,177,066,730	△494,418,037	1,091,948,553	1,586,366,590	2,682,648,693

6. 성과 보고

(단위: 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5	6	15	3	11	1	47,246,580,760	60,793,719,000	-13,547,138,240
교통행정과	1	1	3	0	3	0	1,921,498,820	3,052,697,250	-1,131,198,430
주차관리과	1	1	3	1	1	1	19,938,935,830	33,583,066,310	-13,644,130,480
건설행정과	1	1	2	1	1	0	275,194,340	585,846,770	-310,652,430
도로과	1	1	3	0	3	0	12,439,392,210	11,700,495,270	738,896,940
치수과	1	2	4	1	3	0	12,671,559,560	11,871,613,400	799,946,160

가. 주요성과

<input type="checkbox"/>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편의)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 : 교통표지판 143개 신설 및 정비 ○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설치 및 유지보수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 12,065백만원(징수율 95.85%)
<input type="checkbox"/>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공유 개방사업 확대 ○ 동네방네 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 독산2동, 독산 1동 ○ 교통소통과 주민안전의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input type="checkbox"/> 걷기 좋은 도시 금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광고물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 : 18,425건 ○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 : 14,966건
<input type="checkbox"/>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민안전 확보 ○ 신속한 보도 및 장애인안전시설 정비
<input type="checkbox"/> 풍수해 안전대책 구축 및 수변감성 하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하수관거정비(1,438km), 하수도 준설(121km), 펌프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66회) ○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 총176건

나. 정책사업목표 현황

(단위 : 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	3	5	1,587,930,560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3	2	4	17,351,980,500
걷기 좋은 도시 금전을 조성한다	2	2	4	180,634,090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한다	3	3	6	11,514,959,620
무재해 달성을 위한 하수사업 추진 및 풍수해 안전대책	3	3	3	7,070,949,580
수변 감성 하천 조성	1	1	1	3,291,824,690

V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4회계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19억 4,2118만원으로 징수률 95.5%이며
- 일반회계 지출액은 285억 8,9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7,69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067만원임.

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교통건설국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 명시이월은 총 12건 70억 55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3건 3억 7,138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3. 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교통건설국의 예산전용은 도로과 1건 2,172만원 치수과 1건 87만 9천원을 전용하였음.

4.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은 405억 5,51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39억 9,478만원임.
세출결산액은 186억 5,7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2억 3,387만원임.
-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2건 7억 2,000만원
 - 사고이월 2건 14억 1,912만원이 이월 되었음.
-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3,869만원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 건수가 전체 99.8%를 차지하고 있음.
미수납액 문제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되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5. 기금 결산

- 202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7,780만원이며
 - 당해연도 증감액은 6,230만원으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7억 2,811만원임.

6. 성과 보고

○ 전략목표 : 안심하고 살기좋은 교통·안전도시 금천 실현

교통건설국은 1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였고, 성과지표 14개를 달성함.

7. 검토 의견

○ 2024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검토 결과,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 사업 및 예산 전용의 건은 당초 계획된 사업 집행에 맞게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레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 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

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